

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. 10. 25 선고 2024가단5397 판결 [건물명도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1. B

2. C

변 론 종 결 2024. 9. 27.

판 결 선 고 2024. 10. 25.

주 문

1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,
가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,
나. 2,920,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에 대하여는 2024. 7. 23.부터, 피고 C에 대하여는 2024. 9. 7.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,
다. 2024. 4. 10.부터 위 가.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73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2015. 11. 7.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(임대인 원고, 임차인 피고 B. 임대차보증금 10,000,000원, 월 차임 730,000원. 월 차임은 매월 10일 후불로 지불하기로 함. 피고 B의 동생인 피고 C이 실제 거주하면서 이용하기로 한다고 특약함)이 차임 연체로 해지되었다. 임차인 피고 B과 점유자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, 연체된 차임 합계 2,920,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, 2024. 4. 10.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73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2. 적용법조

가. 피고 B 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 (무변론판결)나. 피고 C 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판사 최종원

별지